

vennootschap партнерство asociación  
ership партнерство Partnership 合伙  
シップ társaság Partnerschaft パートナーシ  
ートナーシップ партнерство vennootschap  
asociación Partnerschaft társaság  
rtnership 合伙 vennootschap asociación  
ip партнерство VENNOOT  
SHIP партнерство ПАРТНЕРШИП  
CTBO Partnership asociación társ  
társaság 合伙 társaság Parti  
CHAP 파트너SHIP vennootschap ve  
ación társaság Partnership PARTNERS  
TBO vennootschap ПАРТНЕРСТВО 合伙

# 협력회사 행동규범

---

## 랜드오프E&A는 협력회사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동반성장하려 합니다.

랜드오프이앤에이 주식회사(이하 "랜드오프E&A" 이라 함)는 협력회사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동반 성장하려 합니다. 이에,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공하여 랜드오프E&A의 협력회사들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작업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랜드오프E&A는 협력회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규범은 랜드오프E&A(해외 지점 및 법인 포함)에 설계, 조달, 공사, 용역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되며, 랜드오프E&A 또는 랜드오프E&A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규범에 대한 협력회사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랜드오프E&A와의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랜드오프E&A는 협력회사관련정책및기준변경등에따라본규범을 개정할수있으며, 개정된규범을랜드오프E&A홈페이지,협력회사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협력회사에게 공지할수있습니다.



## 인권 및 노동



### 강제근로 금지

협력회사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근로허가증, 여권의 양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아동근로 금지 및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회사는 아동 근로자 고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아동'은 만 15세 또는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아닌 미성년 근로자는 고용할 수 있으나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현지 법령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과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준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현지 법령에서 정한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인도적 대우 및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출신,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령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해 자유롭게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 산업안전

협력회사는 현지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사전 예방관리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잠재적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를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근로자에 대한 공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사태 대비를 위한 근로자 대상 대피 훈련, 탈출 시설, 소화 장비 확보 등을 포함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를 제공하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위험 파악 및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평가 및 통제를 하여야 하며,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경경영



### 환경 인허가 취득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최신본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폐수 및 고형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장 및 폐기·재활용 해야 합니다. 기업의 활동 및 생산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와 고형 폐기물은 그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령을 기준으로 관리·처리한 후 배출·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수 처리 공정의 처리 효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유해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제품 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원·부자재를 선정해야 하며, 유출 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리

협력회사는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배출 시 현지 법령에 따라 관리 또는 처리한 뒤 배출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처리 효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윤리경영



### 청렴성 유지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삼성E&A와의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취득·제공 및 횡령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부패 법규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 준수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담합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협력회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협력회사의 근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및 삼성E&A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협력회사 및 삼성E&A의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경영 시스템



### 경영 시스템 구축

협력회사는 본 규범뿐 아니라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경영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력회사의 리스크 관리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회사 및 그 하위의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